삼정 KPMG
cutting through complexity

NEWSLETTER
Samjong KPMG

KPMG Tax – Global Transfer Pricing Services

Transfer Pricing Newsletter

GTPS

October 5, 2015

KEY CONTACTS

강길원 상무
김상훈 상무
백승목 상무

뉴스레터에 대한 상세 문의사항은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land: Update on transfer pricing legislation

9 월 11 일 폴란드 하원 의회는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개정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현 의회의 임기 기간 중 입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이전가격 규정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에 포함된 이전가격과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분 관계 기준

두 회사간 “지분 관계” 결정 기준 현 5%에서 25%로 개정

② 이전가격보고서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의무화 대상 개정:

- 매출 기준: 전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또는 비용 EUR 2,000,000 초과

③ 이전가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세 내용

- 전년도 매출액 또는 비용이 EUR 1,000,000 를 초과하는 회사의 경우 경제분석 수행 의무화
- 가능한 비교대상기업은 폴란드 소재 회사 포함
- 경제분석 수행이 어려울 시 납세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조건과 독립기업간 적용되었을 조건을 비교하여 해당 거래가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전가격보고서에 첨부
- 전년도 매출액 또는 비용이 EUR 20,000,000 를 초과할 시 그룹의 전망, 이전가격 정책, 사업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추가적인 정보(마스터파일)를 제공 필요

Mexico: Transfer pricing, country-by-country reporting proposals

9 월 8 일 발표한 2016 년 멕시코 연방 예산안에 OECD 의 BEPS 관련 이전가격 공시정보 확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전가격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하여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는 마스터파일(Master File), 로컬파일(Local File), 국가별 보고서(CbC report)가 있습니다. 각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마스터파일:
조직 구조, 사업 내용, 무형자산 소유 내역, 특수관계자 간 금융 활동 내용, 재무상태 및 세금납부 현황

② 로컬파일:
조직 구조, 사업 전략 및 활동 내용, 회사 내부 거래 내용, 납세자 재무 정보 및 이전가격 분석 시 사용된 비교가능거래 또는 회사에 대한 정보

③ 국가별 보고서:
각 과세관할 지역별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소득 분배 및 세금 납부 현황, 과세관할권 내 경제 활동 수행 지역, 다국적그룹의 고정사업장 포함 모든 회사의 목록 및 주요 사업 활동, 법인의 세무상 주소와 과세관할 지역이 상이할 시 해당 법인의 과세관할권 명시

멕시코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규정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 정보 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과세당국은 자국에 진출한 외국법인의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에게 직접 국가별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해당 자료 요청 받은 날로부터 120 영업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ITALY: FIVE-YEAR TAX AGREEMENT; TREATMENT OF CROSS-BORDER ITEMS,TRANSFER PRICING

이탈리아는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조항을 법령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이탈리아에 3 천만 유로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에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전가격 등 쟁점 세무이슈에 대하여 사전에 다국적 기업과 이탈리아 세무당국이 5 년간 과세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의 가능한 계약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판정 문제
-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및 귀속 소득에 대한 판단
- 국가 간 이자, 배당, 로열티 지급과 관련한 국내세법 및 조약상 세무처리 방안

이탈리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상기 방법을 통해 투자 계획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Netherlands: "Country-by-country" reporting, documentation proposed for 2016

네덜란드 정부는 2015 년 9 월 15 일,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OECD 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Action 13 과 관련하여 국가별 보고서와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변화가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결 매출액(글로벌 매출액 합산 기준)이 5 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보다 더 엄격해진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며, 본 개정안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 입법화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시된 국가별 보고 규정은 네덜란드 법인세법 제 8b 조에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안은 단지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보고서 및 이전가격 문서화에 엄격한 제출기한을 신설하여 과태료 규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BEPS Action 13 의 목적인 조세투명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별보고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국가별 보고서 규정만으로도 다국적기업에게 글로벌 사업운영내역, 소득분배, 납세액, 개별 지역 내 경제활동 관련 지표 등에 대한 정보를 당해 소재지 국가에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2016 년 1 월 1 일부터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기업은 연결 기준 매출이 7 억 5 천만 유로를 초과할 시 다음 해 12 월까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국가별 보고는 2017 년도에 과세당국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영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OECD 가 2015 년 6 월에 발표한 국가별 보고서 적용방안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발생매출, 세전손익, 납세액, 이익잉여금, 자본, 종업원 수, 유형자산 및 현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정보도 포함해야 할 것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재한 국가가 모회사의 과세 거주지국인지 여부
- 소재지국이 과세지국이 아닐 시 모회사의 과세거주지국
- 주된 사업활동

향후 국가별 보고서 구성 및 세부 내용 관련 추가적인 지침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BEPS Action 13 은 다국적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과 자동정보교환협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정보교환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모회사의 자회사가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국가별보고서를 네덜란드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문서화 규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25 유로의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연 매출 5 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회사에게 보다 더 엄격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 이전가격정책, 경영활동, 소득분배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마스터파일을 작성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와 해외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분석 자료를 담고 있는 로컬파일 역시 제출되어야 하며, 언어는 영어와 네덜란드어 중 납세자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BEPS Action 13 의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에 대한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의 개정안에는 추가적으로 문서화에 대한 형태와 세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은 법인세 신고 전 준비되어 제출되어야 하는 등 이전가격 문서화 구비 기간이 단축되어 실무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서화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에게 미구비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 매출 5 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회사는 강화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따라야 하고, 7 억 5 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는 국가별 보고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Denmark: Country-by-country reporting, documentation proposed

덴마크 정부는 2015 년 9 월 18 일 현행 세법 개정안 제출시 OECD BEPS 규정을 수용하여 국가별보고서와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본 개정안은 덴마크 소재 다국적기업이 국가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자국 소재 외국계 기업도 특정 요건에 부합할 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OECD 가 지난 6 월 제안한 국가별보고서 내용을 도입하는 취지입니다. 개정된 문서화 규정은 현행 규정과 유사하나, 조세협약, 무형자산, 그리고 파이낸싱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고 규정

연결기준 매출액이 8 억 3 천 9 백만 미달러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 합니다. 작성된 국가별보고서는 현지에 위치한 자회사/고정사업장 등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제공 됩니다.

모회사가 덴마크에 소재한 경우 국가별 보고서는 덴마크 과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덴마크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계 회사도 아래 조건에 부합할 시 덴마크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 *모회사가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 거주지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가별보고서 정보교환에 대해서 덴마크와 자동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있지 않거나;*
- *자동정보교환협정을 금하는 법안이 존재하여 정보교환이 어려울 시*

덴마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 중 이전가격 문서화 구비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연결기준 매출이 DKK 560 억을 초과할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삼정회계법인 이전가격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ubscribe | Unsubscribe | Privacy | Leg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Week in Review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01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